

[2015.7.28]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란색 글씨-수정된 부분)											
1-9페이지 핵심 4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75 344 1332 400"> <tr> <td data-bbox="475 344 619 400">2. 수립권자</td> <td data-bbox="619 344 1332 400">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</td> </tr> </table>		2. 수립권자	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 ·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								
2. 수립권자	특별시장·광역시장· 특별자치시장 ·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											
1-16페이지 핵심 12 에너지절약계획서	(2) 에너지절약계획서 적정성 검토 ① 허가신청 등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다음의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자문 하게 할 수 있다.											
1-42페이지 핵심 34 에너지관련정보(통계)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75 651 1471 976"> <tr> <td colspan="2" data-bbox="475 651 1471 730">예제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관련 통계 및 에너지총조사에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?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75 730 675 808">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수급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.</td> <td data-bbox="675 730 1471 808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75 808 675 853">②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은 5년 주기로만 작성해야 한다.</td> <td data-bbox="675 808 1471 853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75 853 675 898">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td> <td data-bbox="675 853 1471 898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475 898 675 976">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·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</td> <td data-bbox="675 898 1471 976"></td> </tr> </table>		예제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관련 통계 및 에너지총조사에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?		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수급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.		②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은 5년 주기로만 작성해야 한다.		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		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·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	
예제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관련 통계 및 에너지총조사에 관련된 내용 중 가장 잘못된 것은?												
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수급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.												
②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은 5년 주기로만 작성해야 한다.												
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다소비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												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에너지사용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작성·분석하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												
1-45페이지 핵심37 행정계획	(2) 실시계획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01 1055 1393 1137"> <tr> <td data-bbox="501 1055 675 1137">1. 수립권자</td> <td data-bbox="675 1055 1393 1137">· 관계 행정기관의 장 · 시·도지사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)</td> </tr> </table>		1. 수립권자	· 관계 행정기관의 장 · 시·도지사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)								
1. 수립권자	· 관계 행정기관의 장 · 시·도지사(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도지사)											
1-55페이지 핵심42 효율관리기자재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01 1200 1393 1245"> <tr> <td data-bbox="501 1200 675 1245">2. 품질기준</td> <td data-bbox="675 1200 1393 1245">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함</td> </tr> </table>		2. 품질기준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함								
2. 품질기준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함											
1-79페이지 핵심58 한국에너지공단 정관 및 사업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01 1294 1396 1509"> <tr> <td data-bbox="501 1294 675 1509">1. 정관내용</td> <td data-bbox="675 1294 1249 1509"> ① 지부,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②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재산에 관한 사항 ④ 규약·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 </td> <td data-bbox="1249 1294 1396 1509">(산) 인가</td> </tr> </table>		1. 정관내용	① 지부,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②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재산에 관한 사항 ④ 규약·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	(산) 인가							
1. 정관내용	① 지부,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②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재산에 관한 사항 ④ 규약·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	(산) 인가										
1-102페이지 핵심70 건축허가 및 신고	(1) 건축허가 1) 시장 등의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(2) 건축신고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·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m 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(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.)											
1-103페이지 핵심71 건축허가의 불허 등	(2) 허가 및 착공의 제한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12 1939 1433 2063"> <tr> <td data-bbox="512 1939 770 1984">제한권자</td> <td data-bbox="770 1939 1433 1984">제한사유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12 1984 770 2063">2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</td> <td data-bbox="770 1984 1433 2063">지역계획 또는 도시·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td> </tr> </table>		제한권자	제한사유	2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	지역계획 또는 도시·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					
제한권자	제한사유											
2.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	지역계획 또는 도시·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											

해당 페이지	정 오 표 (파랑색 글씨-수정된 부분)						
<p>1-105페이지</p> <p>핵심72 가설건축물</p>	<p>(1)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, 군수, 구청장은 도시·군계획시설 또는 도시·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다음의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(2)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① 재해복구·홍행·전람회·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2년 이내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전에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						
<p>1-109페이지</p> <p>핵심75 건축물의 유지관리</p>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02 548 1444 1064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502 548 635 593">구분</th> <th data-bbox="635 548 1444 593">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02 593 635 1064">3. 점검 실시</td> <td data-bbox="635 593 1444 1064"> <p>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. 건설기술용역업자 3.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<p>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점검기준 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점검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 용	3. 점검 실시	<p>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. 건설기술용역업자 3.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<p>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점검기준 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점검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	
구분	내 용						
3. 점검 실시	<p>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자로 하여금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2. 건설기술용역업자 3.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<p>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점검기준 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점검통지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점검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						
<p>1-111페이지</p> <p>핵심76 구조안전의 확인 (1)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[표 밑 예외 삭제]</p>	<p>■ 비고 : 착공신고시 건축주가 구조안전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						
<p>1-128페이지</p> <p>핵심86 환기설비</p>	<p>(3) 기계환기설비 설치기준(설비규칙 별표 1의5)</p>						
<p>1-133페이지</p> <p>핵심89 관계전문기술사 협력 등</p>	<p>(2) 기술사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02 1489 1332 1612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502 1489 646 1534">구분</th> <th data-bbox="646 1489 853 1534">기술자격</th> <th data-bbox="853 1489 1332 1534">설비분야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02 1534 646 1612">③ 토목분야 기술사</td> <td data-bbox="646 1534 853 1612"></td> <td data-bbox="853 1534 1332 1612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0m 이상 토지굴착 • 5m 이상 옹벽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술자격	설비분야	③ 토목분야 기술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0m 이상 토지굴착 • 5m 이상 옹벽
구분	기술자격	설비분야					
③ 토목분야 기술사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0m 이상 토지굴착 • 5m 이상 옹벽 					
<p>1-147페이지</p> <p>핵심97 표준시방서</p>	<p>(1) 건축공사</p> <p>1) 용어의 정의</p> <p>① 감리원 :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39 1758 1428 1915"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39 1758 1428 1814">1. 건축법규, 건축사법규,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39 1814 1428 1870">2. 건설기술진흥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39 1870 1428 1915">3.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② 담당원 :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539 1971 1332 2072"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539 1971 1332 2027">1.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539 2027 1332 2072">2. 건설기술진흥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1. 건축법규, 건축사법규,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	2. 건설기술 진흥 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	3.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	1.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	2. 건설기술 진흥 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	
1. 건축법규, 건축사법규,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							
2. 건설기술 진흥 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							
3.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							
1.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							
2. 건설기술 진흥 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							